



#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 목차

언제 이의를 제기하나	2
이의 제기 방법	2
급여 지속:	3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3
이의 제기 진행 상태 확인	3
웹사이트 방문하기	3

최근에 Social Security 연금이나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영어 약자), 장애 연금 청구 신청이 거부되었거나, 비의료 관련 문제에 대한 사회보장국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이의 제기 절차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각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심 (서식 SSA-561).
  - 재심이란 첫 번째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이 신청 자료를 완전히 재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당자는 원래 판정에 사용된 모든 입증 자료와 함께 새로 추가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 자격이 되는 장애가 있는지에 대한 판정 재심사를 요청하면, 사회보장국은 그 요청을 해당 주 Disability Determination Services

(장애 판정 서비스)(DDS, 영문 약자)로 보냅니다. 이의 제기를 한 사람은 DDS의 재고 심사 기간 동안 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의료 문제(예: 초과 지급)에 대한 사회보장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재심은 사회보장국 지역 사무소 또는 지급 센터에서 처리됩니다. 이의 제기를 처리하는 지역 사무소나 지급 센터의 담당자가 신청자에게 추가 입증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행정법 판사의 심리 (Form HA-501).
  - 심리는 첫 번째 심사나 재심 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행정법 판사 또는 ALJ가 신청자의 주장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ALJ는 모든 입증 자료를 검토합니다.
  - 이의를 제기한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지역 사무소는 심리 요청을 사회보장국 심리 사무소 중 하나로 보냅니다. 신청자는 심리 절차에 관한 정보를 심리 사무소에서 받게 되며 심리 일정이 잡히면 심리 사무소의 통지를 받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www.ssa.gov/appeals/hearing\\_process.html](http://www.ssa.gov/appeals/hearing_process.html)에서 알아보십시오.
- Appeals Council(이의 신청 심리 위원회)의 심사 (Form HA-520).
  - 심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심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Appeals Council(이의 신청 심리 위원회)는 심사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각할 수 있고,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Appeals Council(이의 신청 심리 위원회)가 심사 요청을 인정하면, 새로운 결정을 내리거나 추가 조치를 위해 행정법 판사에게 사례를 반송합니다.
  - Appeals Council Request for Review(재심 위원회의 검토)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ssa.gov/appeals/appeals\\_process.html](http://www.ssa.gov/appeals/appeals_process.html)에서 알아보십시오.
- Federal Court(연방 법원) 검토
  - Appeals Council(이의 신청 심리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Appeals Council(이의 신청 심리 위원회)가 심사 요청을 거부하면 연방 지방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Federal Court(연방 법원) 심사 절차에 관해서는 [www.ssa.gov/appeals/court\\_process.html](http://www.ssa.gov/appeals/court_process.html)에서 알아보십시오.

## 언제 이의를 제기하나

이의 제기를 하려면 신청 기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심사 결과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늦게 받았다는 증명을 별도로 하지 않는 한, 편지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5일 이내에 편지를 받았을 거라고 간주합니다.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의 제기 권리는 소멸하며 마지막 결정이 최종 결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 60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하지 않으면, 심리 기회를 잃게 됩니다.

기한 내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 연장 신청은 연장 사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사회보장국에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이의 신청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을 마감일로 합니다.

## 이의 제기 방법

사회보장국의 결정 통지를 받은 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 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미국 밖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의 제기 신청은 [www.ssa.gov/benefits/disability/appeal.html](http://www.ssa.gov/benefits/disability/appeal.html)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재심, 행정법 판사의 심리, Appeals Council(이의제기 심리 위원회) 재심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이의 제기를 신청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지만, [www.ssa.gov/forms](http://www.ssa.gov/forms)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료 전화 **1-800-772-1213**(TTY **1-800-325-0778**)으로 전화하거나 지역 Social Security 사무소에 연락하여 이의 제기 양식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초과 지급

초과 지급을 받았다면, 사회보장국은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되었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이 통지서에는 사회보장국에게 재심이나 초과 지급금을 회수하지 않도록(이를 "면제"라고 함) 요청하거나, 금액을 다른 요율로 상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각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웹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장애 중단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더 이상 자격이 되는 장애가 없는 것으로 판정 났다는 통보를 받으면 Request for Reconsideration - Disability Cessation Right to Appeal(재심 요청 - 장애 중단에 대한 이의 제기 권리) (SSA-789)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온라인으로 작성이 불가하며, [www.ssa.gov/forms](http://www.ssa.gov/forms)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지속:

### • 의학적 검토 후:

- 판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더 이상 적격한 장애가 없다는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동안 계속 급여가 지속됩니다

### • 비의학적 검토 후:

- SSI를 받고 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비의학적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동일한 금액이 계속 지급됩니다.
  - 이의 제기에 대해 재심사한 결정이 불리하게 내려진다면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받은 돈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SSI에 기반한 의료 지원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의료 지원이 중단되면 의료 지원 기관에서 연락을 드립니다.

##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이의 제기 신청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거나 대리인 선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변호사나 신청자와 Social Security 프로그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선임된 대리인과 함께 모든 재심 사안들을 처리합니다. 대리인은 Social Security 문제에 대해 신청인을 대신해 행동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청구에 관한 심사 결과 사본을 받게 됩니다.

대리인은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먼저 서면 승인을 받지 않고는 신청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징수할 수 없습니다.

사회보장국은 대리인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줄 단체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많은 대리인이 선임 비용을 부과하지만, 자격이 되는 사람에 한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신청자가 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만 비용을 부과하는 대리인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리인은 선임 비용을 징수하기 전에 서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하기로 한 경우, 서면으로 사회보장국에 알려야 합니다. 이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별 양식인 Claimant's 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청구인의 대리인 지정) (Form SSA-1696)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 진행 상태 확인

이의 제기 신청을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제출했는지, 사무실에서 직접 제출했는지에 관계없이 개인의 *my Social Security* 계정을 이용하여 이의 제기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y Social Security* 계정은 사회보장국과 관련된 Social Security 국에 연락하기 사회보장국에 연락하는 방법은 온라인, 전화, 직접 방문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고 봉사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Social Security 국은 8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연금과 재정적 보호를 제공하여 삶의 여정에서 현재와 미래에 안정된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 웹사이트 방문하기

Social Security 업무를 어디에서나 처리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www.ssa.gov](http://www.ssa.gov) (영어로만 제공) 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Medicare 처방약 플랜 비용의 추가 도움을 신청.
- 대부분의 연금을 신청.
- 사회보장국의 간행물 찾기.
-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확인.

*my Social Security* 계정을 만들면, 다음과 같이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Social Security 명세서 검토.
- 본인의 소득 확인.
- 연금 확인 통지서 인쇄.
- 계좌 입금 정보 변경.
- Medicare 카드 재발급 요청.
- SSA-1099/1042S 재발급.
- 카드상에 변경 사항이 없고 주 정부에서 참여하는 경우, Social Security 카드 재발급 요청.

이러한 서비스 중 일부는 영어로만 제공됩니다. 사회보장국은 사회보장 업무 처리를 돕기 위해 무료 전화 통역과 사회보장 사무소 방문 시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화하기

사회보장국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주 7일, 하루 24시간 많은 자동화된 서비스를 전화로 제공합니다. 청각 장애가 있거나 난청이 있다면 무료 전화 **1-800-772-1213** 또는 TTY 번호 **1-800-325-0778**을 이용하십시오.

직원과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직원이 전화 응답을 해드립니다. 무료 통역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영어 음성 자동화 메시지가 나오고 나서 담당자가 응답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십시오. 담당자가 통역사에게 연락하여 전화 통화를 도와드립니다. 전화로 업무를 끝낼 수 없는 경우, 사회보장국은 지역 사회보장 사무소 방문 약속을 잡아드리며, 방문 시 통역사를 배정해 드립니다. 통화량이 많은 바쁜 시간대에는 통화 중 신호와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인내심 있게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사무소 방문 약속 잡기

사무소 찾기 (영어로만 제공) 웹 페이지에서 우편 번호를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사무소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출할 서류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 원본 또는 발행 기관이 인증한 사본이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Securing today  
and tomorrow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Publication No. 05-10058-KOR | May 2022 (March 2022 edition may be used)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Your Right To Question The Decision Made On Your Claim (Korean)  
Produced and published at U.S. taxpayer expense  
미국 납세자가 낸 돈으로 제작 및 출판되었음